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일을 위한 정부  
보다 나은 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판 후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계획(RMP) 제출 대상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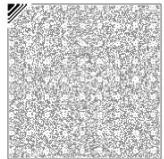
1.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7조의2제1항 제3호와 관련, 위해성관리계획의 제출이 필요한 성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연번	성분명(제형)	사유
1	프로파세타몰(주사제)	의료진의 감작(접촉성피부염), 혈전증,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주사부위반응 등

2. 동 성분을 함유한 허가(신고)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에 2019.10.18.(금)까지 동 규정에 따른 위해성 관리계획을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니,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 등에 동 사항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성분 함유 품목을 신규로 허가 신청 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해성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관리과장, 마약정책과장, 마약관리과장, 의약품품질과장, 임상제제과장,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한약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약품심사조정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약품규격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순환계약품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소화계약품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종양약품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약효동등성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바이오심사조정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제약협동조합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심사관 **정희금** 연구관 **조창희** 의약품안전평가과장 **문은희** 전결 2019. 7. 18.

## 협조자

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4763 (2019. 7. 18.)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  
안전처)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720 팩스번호 043-719-2700 / garamjhk@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